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8. 9. 20.

사회건설위원회

1. 심 사 경 과

가. 발의일자 : 2018년 8월 31일

나. 발 의 자 : 최봉희 의원 외 3명

다. 회부일자 : 2018년 9월 7일

라. 상정일자 : 제209회 영등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사회건설위원회(2018. 9. 14.)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최봉희 의원)

가. 제안이유

- 부부의 날을 기념하고 그 의미를 확산시켜 구민의 건강하고 화목한 가정 형성과 건전한 사회문화 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과 구청장의 책무(안 제1조~제2조)
- 부부의 날 기념사업(안 제3조)
- 유공자 표창(안 제4조)
- 보조금 지원(안 제5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 이인제)

- 본 조례안은 부부의 날을 기념하고 그 의미를 확산시켜 건강하고 화목한 가정과 건전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제안된 조례안으로 총 6개의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 주요 제정 내용은
 -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2조는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 안 제3조는 부부의 날 기념행사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 안 제4조는 건강가정 조성에 공헌한 유공자 표창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 안 제5조는 기념행사를 추진하는 법인이나 단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음.
- 부부의 날은 핵가족시대에 가족의 핵심인 부부가 화목해야만 청소년 문제와 고령화 문제 등 각종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2007년 5월 2일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5월 21일 ‘부부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제정하여 매년 부부의 날을 기념하는 행사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건강가정기본법」 제5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본 조례안은 영등포구민의 화목한 건강가정 형성과 건전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또한 가정 친화적 환경조성을 위하여 부부의 날 기념행사 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심사결과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

(최봉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3
----------	----

발의년월일 : 2018년 8월 일

발의자 : 최봉희 의원 외 3명

1. 제안이유

5월 21일 부부의 날을 기념함으로써 그 의미를 확산시켜 구민의 건강하고 화목한 가정 형성과 건전한 사회문화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 제정의 목적과 구청장의 책무(안 제1조~제2조)
- 나. 부부의 날 기념사업(안 제3조)
- 다. 유공자 표창(안 제4조)
- 라. 보조금 지원(안 제5조)

3. 제정안 : “별첨”

4. 참고사항

- 가. 관련근거: 「건강가정기본법」 제5조

나. 예산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다. 입법예고(2018. 8. 24. ~ 8. 30.): 의견 없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매년 5월 21일 부부의 날을 기념하고 그 의미를 확산시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민의 건강하고 화목한 가정 형성과 건전한 사회를 조성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부의 날 기념행사 등 건강한 가정과 건전한 사회를 조성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3조(기념사업 등) 구청장은 부부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부부의 날 기념행사
2.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격려
3. 그 밖에 구청장이 부부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4조(유공자 표창) 구청장은 민주적인 가정형성, 가정친화적 환경조성, 양성평등한 가족가치 실현 및 가사노동의 정당한 가치평가 등을

통해 건강가정 조성에 현저히 공헌한 단체 및 개인, 소속 공무원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5조(보조금의 지원) ① 구청장은 제3조의 기념행사 등을 추진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